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차규근 · 신장식 · 황운하
김선민 · 김준형 · 이해민
정춘생 · 백선희 · 서왕진
강경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·개량·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,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 편익을 제공함에도 설치 이후의 운영·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,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

한 전기요금, 수도요금, 가스요금 등 운영·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·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0조)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시설 또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된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.

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9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, 수도요금, 가스요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·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의 지원) ① ~ ⑧ (생 략)	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의 지원) ① ~ ⑧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⑨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시 설 또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된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 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 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9 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 대하 여 해당 시설의 공동이용에 직 접 필요한 전기요금, 수도요금, 가스요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운영·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 다.</u>